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개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 발의된 안건임.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양성평등 확대와 그 외 능력개발,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기구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여성농어업인의 날 및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기념행사 개최(필요시 통합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특히,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사회에서 점차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역할 증대 및 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6. 2. 원안가결